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당한 특약의 유형 추가〉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81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3.
3. 회 부 일 : 2025. 4.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특약 예시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용에 대한 수급사업자 부담 전가 등 약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막는 약정 사례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법에 명시

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4).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u>
<u><신설></u>	5. <u>원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1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u>
4. (생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면서 부당한 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일부 부당한 특약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¹⁾

-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6조의4²⁾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영 제6조의4제4호)을 포함하여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을 열거하고 있고,
- 나아가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부당특약 행위 유형을 5가지(수급사업자의 권리제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1) 법률에서 부당한 특약에 대한 효력에 관해 규정하는 조문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예정임.

2)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권리제한,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정 기준보다 높이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 나누어 상세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법률상 부당한 특약의 유형>

구분	효력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효력유지

□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은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에서는 엄격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 즉, 해당 행위는 제25조제1항³⁾의 시정조치, 제25조의3제1항제3호⁴⁾에 따른 과징금, 제26조제2항⁵⁾에 따른 벌점 부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3)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5)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제30조제1항제1호6)에 따른 벌칙의 대상임.

□ 개정안은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법률에 추가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봄.

□ 다만, 개정안 제3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은 현행 시행령의 규제를 법률에 상향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실익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또한, 개정안 제3조의4제5호의 규정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의 유형으로 해석하여 제재를 내리고 있는 행위인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둘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감액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무조건 상계하도록 설정한 원사업자(대보정보통신)의 특약에 대하여

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법 제3조의4제1항의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아울러 2025년 10월 2일 시행예정인 법률(법률 제20893호) 제3조의4 제3항⁷⁾에서는 즉시 무효로 보는 부당한 특약(제2항제1호부터 제3호)과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보는 부당한 특약(같은 항 제4호)을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부당한 특약의 유형만 신설하고 있을 뿐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법률의 체계와 법률 개정의 실익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임.

- 먼저 법률 체계의 측면에서, 법에 열거된 부당특약의 유형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이른바 ‘비용전가형 부당 특약’이고, 그 외의 부당한 특약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법률에 신설하려는 특약은 ‘비용전가형 부당특약’이 아니고, 수급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약정에 가까워 피해의 중대성이나 명백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처럼 하위법령에 두고 그 효력도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

7)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정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입법의 실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부당한 특약은 현행 시행령이나 법 해석을 통해 규제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고, 개정안 제3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위탁취소나 정당한 사유없는 대금 감액’의 사례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⁸⁾

문 의 처
02)6788-5109

8) 2024년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위탁의 취소·변경 없이 계약을 이행한 비율’이 제조 분야는 88.3%, 건설분야는 89.2%에 달하고, ‘당초 계약대로 감액없이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제조 분야는 96.4%, 건설분야는 86.9%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임.